

경 고 장

아 산 시

위 기관에서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 되어 공익을 우선시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함에도

- 물품구입 및 자동차 정비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
 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3조(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)에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또는 배우자 및 직계 존속·비속이 운영한 업체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 할 수 없다.
- 그런데도 아산시 25개 부서에서는 2016년~2019년 감사일 현재까지 아산시 시의원 및 배우자 직계존속·비속 등이 운영하는 5개 업체에서 물품구입, 자동차정비, 간담회에 따른 식사제공 등 총 109회 26,943 천원의 계약을 체결하여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있다.

이에 「충청남도 자체감사 규칙」 제21조에 의거 엄중히 “기관경고” 조치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2019. 6. 27.

충 청 남 도

